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13 선고 2020가합412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승주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82,65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9. 1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무전기 및 위성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8. 2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ID1 및 IP1 중계기1)를 납품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중계기들을 일본 회사인 D 및 E(이하 ‘E’라 한다)를 순차로 거쳐 일본 회사인 F에 납품하였고, 물품대금 지급은 F로부터 E 및 D, 소외 회사, 원고에게 각 순차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11.경 발주한 ID1 중계기 1,700개(4차분) 중 1,200개와 IP1 중계기 13,000개(5차분) 중 11,400개에 대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359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6. 변론종결한 후 2019. 12. 17.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21,950,000엔2)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0. 1.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1. 17. 54,334,327원을, 2020. 2. 5. 68,011,030원을, 2020. 2. 27. 71,936,988원을 각 추심하여 합계 194,282,345원을 추심하였으나 나머지 채권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거래업체인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9. 11. 1.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82,650,000엔(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해당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3)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바. 이에 따라 D은 피고에게 2019. 12. 25. 10,000,000엔, 2020. 1. 10. 72,650,000엔의 합계 82,650,000엔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선행소송 판결과 같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소송의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임박한 무렵인 2019.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82,65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외 회사가 무자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 존부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18. 11.경 발주한 일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21,95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기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선행소송 당시 소외 회사가 2019. 11. 8.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금액은 본소 인용금액보다 약 26억 원이 많은 4,896,868,455원에 해당하는데, 소외 회사의 반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더라도 당시에 이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고, 나아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0943)는 2022. 11. 2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소외 회사의 무자력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성남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일본국 통화 221,950,000엔⁴⁾이 성립해 있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서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갔으나 194,282,345원의 예금채권을 추심한 데 그친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이 된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2,650,000엔⁵⁾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외에 소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금융재산 등은 위 예금채권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일본국 통화 221,950,000엔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선행소송의 변론종결(2019. 11. 26.) 및 판결선고(2019. 12. 17.)가 임박한 2019. 11. 1.에서야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해준 점, ②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한 위 채권은 당시 소외 회사가

보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주거래업체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나 변제자력 유무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채무의 본래 목적에 따른 대금의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피고가 평소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온 거래방식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여러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임박한 무렵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졌고, 해당 채권은 소외 회사의 주요 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거래업체로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나 변제자력 유무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평소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온 거래방식에 비추어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2019. 12. 25. 10,000,000엔, 2020. 1. 10. 72,650,000엔의 합계 82,650,000엔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82,65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일본국 통화 82,65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신, 판사 이희경, 판사 한승진

별지

목 록

주식회사 C의 일본국 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일본국 통화 82,650,000엔(¥). 끝.

- 1)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감쇠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감쇠된 전송신호를 새롭게 재생하여 다시 전달하는 재생중계장치를 간섭제거중계기(ICS Repeater)라 하고, ID1 및 IP1은 간섭제거중계기의 모델명이다.
- 2) 선행소송 판결 선고 무렵인 2019. 12. 17.자 원고 주장 환율(100엔당 1064.98원)에 따른 환산금액은 2,363,723,110원이다.
- 3) 피고는 결제 방식의 간소화에 해당할 뿐 채권양도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고로 하여금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을 제24호증)가 그 실질은 채권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25.자 원고 주장 환율(100엔당 1060.36원)에 따른 환산금액은 2,353,469,020원이다.
- 5)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25.자 원고 주장 환율(100엔당 1060.36원)에 따른 환산금액은 876,387,540원이다.